#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25

발의연월일: 2025. 3. 18.

발 의 자 : 남인순 • 윤종군 • 박지원

이수진 • 박홍근 • 김준혁

전진숙 · 김남희 · 백혜련

민병덕 • 김기표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우선 가해국인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과 더불어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확산하며, 나아가 여성인권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조사·연구 사업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일본군위안부연구소의 사업이 한국여

성인권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동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 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자율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고, 연구 결과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확인되는 여성인권과 세계평화라는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 설).

#### 법률 제 호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5(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 등) 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전시 등을 수행하고, 여성인권 증진과 세계평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여성인권평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 연구
  - 2.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의 발굴 수집 정리 보존 관리
  - 3. 일본군위안부 관련 교육·홍보 및 전시·기념사업

- 4.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국내외 교육·교류·협력사 업
- 5. 세계 분쟁·갈등 지역의 여성인권 침해와 평화 저해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국내외 교육·교류·협력사업
- 6.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교류사업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8. 그 밖에 여성인권과 평화에 관한 사업 또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⑥ 국가는 재단의 사업 수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⑦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접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⑧ 재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⑨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60일이 비에 10명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설립 당시의 재단의 이사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5(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 등) ① 일본군위안부 피 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 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전 시 등을 수행하고, 여성인권 증 진과 세계평화를 선도하기 위 하여 여성인권평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임 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수행한다. 1.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 구 2.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의 발굴·수집·정리·보존·관 리

- 3. 일본군위안부 관련 교육·홍 보 및 전시·기념사업
- 4.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위한 관련 국내외 교육·교류· 협력사업
- 5. 세계 분쟁·갈등 지역의 여 성인권 침해와 평화 저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내외 교육·교류·협력사업
- 6.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의 미 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교류사 업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에 딸린 사업 또는 이와 관련
   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
   탁받은 사업
- 8. 그 밖에 여성인권과 평화에 관한 사업 또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⑥ 국가는 재단의 사업 수행과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⑦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법 | 에도 불구 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른 사업-----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 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접수 절차 등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재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 의 열람 · 복사 · 대여 또는 위 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 다. ⑨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제11조제1항에 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